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 설치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1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101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 설치(안 제47조의2 신설)	2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10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23.

다. 회 부 일 : 2025. 6.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 설치(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2(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① <u>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u>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지원</u> <u>2. 안전점검 결과 분석 지원</u> <u>3.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예측 및 현황조사</u> <u>4. 지하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u> <u>5. 안전점검 장비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u> <u>6.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촉진</u> <u>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u> <u>8. 그 밖에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그 밖에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이고, 2020년 284건에서 2024년 10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연간 약 100건 이상(연 평균 173.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 평균
284	142	177	162	102	867	173.4

※자료: 국토교통부

*주- 지반침하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4건), 다짐(되메우기) 불량(156건), 굴착공사 부실(85건) 등이 있음.

2025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70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지하안전정보 시스템¹⁾에 신고되어 있는데,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 <https://www.jis.go.kr>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반침하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 실태조사, 현장조사 등²⁾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적인 지반침하 점검³⁾보다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각 시·도의 최근 5년간 현장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의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고, 경북·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만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음.

【최근 5년(2020~2024년) 시·도의 현장조사 실적】

(단위: km)

시·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광주
합계	13,944	4,188	321	48	38
2020년	1,958	724	-	27	-
2021년	1,645	843	-	6	-
2022년	1,600	687	321	4	-
2023년	3,641	920	-	5	-
2024년	5,100	1,014	-	6	38

※자료: 국토교통부

*주- 현행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현장조사 실적임(현행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로서의 의무적 안전점검 실적은 제외)

-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 조사 실적도 포함

있는 것으로 보임.⁴⁾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 등을 지원⁵⁾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반탐사 지원 외에도, 현행법 제34조⁶⁾에 따른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안전점검 결과 분석,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예측 및 현황조사, 지하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4) 서울경제, “[기고]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해야”, 2024.10.31.

동아일보, “어디서 폭 빠질지 모르는데… 전국 싱크홀 관리인력 12명뿐”, 2025.3.28.

5)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반탐사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대상(개소)		181	266	388	576	627
지원	점검대상(개소)	207	332	375	524	601
실적	탐사연장(km)	925.13	1,143.43	1,386.14	1,665.28	2,308.28

※ 자료: 국토교통부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현행법 제42조7)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의 지하정보 구축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연속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지하안전관리 인력·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